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8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의원)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

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 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제공,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정의함(안 제3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 및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와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사회에 통합·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

참고로, 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되었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절차 및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2026년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상당 부분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최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91호)과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바,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양 제정안은 목적, 기본이념, 전달체계, 자립지원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률 제명, ‘거주시설’ 및 ‘주거 전환지원’ 등 주요 용어 정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유무,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명칭, 거주시설 전환에 관한 규정 유무, 장애인자립친화도시 규정 유무 등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정·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① 제명: <김예지의원안>은 제명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최보훈의원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함.

② ‘지역사회 자립’ 정의: <김예지의원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정의

<최보훈의원안>은 거주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적 거주형태의 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정의

③ ‘주거 전환지원’ 정의: <김예지의원안>은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최보운의원안>은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경우, 장애인 자신의 주택은 제외될 수 있음)

④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김예지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둘 수 있도록 규정

<최보운의원안>은 미규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업무 수행)

⑤ 거주시설 전환 및 장애인자립친화도시: <김예지의원안>은 거주시설의 전환 및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최보운의원안>은 미규정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